

(비공식 번역본)

**투자위원회 고시**

**제23/2565호**

**의료혁신지구 투자촉진 방안**

투자위원회 고시 『제8/2565호 투자촉진 정책과 기준』 및 투자위원회 고시 『제9/2565호 국가 개발의 중요 산업에 관한 투자촉진 방안』에 따라 태국 내 의료혁신개발과 연구센터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불기2520년(1977년) 투자촉진법 제16조, 제18조, 제35조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을 고시한다.

1. 국가혁신청(NIA: National Innovation Agency)(공공기관) 고시에 따른 요티(Yothi) 의료혁신지구는 투자촉진 지역으로 지정한다.
2. 요티(Yothi) 의료혁신지구의 유치 대상(Target activities)은 다음과 같다.
  - 바이오테크놀로지
  - 임상연구
  - 전자설계
  - 소프트웨어, 디지털플랫폼 또는 디지털 콘텐츠 개발
  - 혁신파크
  - 메이커 스페이스 또는 제작 실험실(Fabrication laboratory)
  - 연구개발
  - 공학설계
  - 과학 실험실
  - 보정 서비스
  - 직업 훈련 센터
3. 2번에 따른 활동 대상에 대한 추가 권리, 혜택 및 조건은 다음과 같다.

## 추가 권리 및 혜택

법인세 면제 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 간 투자 순익에 대해 법인세 일반 세율의 50% 감면

## 조건

- 3.1 프로젝트는 국가혁신청(공공기관)의 고시에 따라 요티(Yothi) 의료혁신지구에 입주해야 한다.
- 3.2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이 요티 의료혁신지구에 위치한 연구원(institute) 또는 정부 기관과 의료 협력을 해야 한다.
  - 3.2.1 일-학습 통합프로그램(WiL, Work-Integrated Learning), 이원적 직업교육 훈련제도(Dual Vocational Training Program) 및 산학협력 교육과정(Cooperative Education) 또는 투자위원회에서 승인한 태국 과학 및 기술 인력 개발에 대한 협력 등을 포함하여 규정된 형식에 따른 교육 기관과의 협력을 해야 한다. 학생 또는 대학생들이 훈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협력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, 직업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 수는 투자촉진을 신청한 프로젝트의 전체 직원 수의 10% 이상 또는 40명 이상이어야 하며, 둘 중 적은 수를 적용한다.
  - 3.2.2 MedTech와 같은 딥테크(Deep Tech) 개발에 있어 병원, 의료기관, 교육 기관, 연구기관 또는 정부 기관과 협력해야 하며, 협력 프로젝트는 국가혁신청(공공기관)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3.3 본 방안에 따라 직업 훈련을 받는 학생 또는 대학생 수는 다른 투자 촉진방안에 적용되어서는 안된다.
- 3.4 각종 투자 촉진 방안에 따라 법인세 면제 권한과 혜택을 받는 프로젝트여야 하며, 법인세 면제 기간은 총 8년을 초과하지 않는다.

본 고시는 2023년 1월 3일부터 유효하다.

고시일 2022년 12월 8일

쁘라웃 찬오차 장군

(Prayut Chan-o-cha)

총리

투자위원회 위원장